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업인은 소득·재해 걱정을
덜게 됩니다.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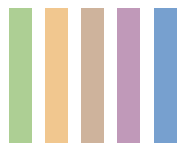
농업인은 소득·재해 걱정을
덜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7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지급

- 2017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농업인의 명절준비 및
영농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는 설명절 전에 조기 지급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2018년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 전
9월에 조기 지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 농작물 피해복구 주요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184%(2.8배) 인상
 - * 대파대 14개 항목(평균 103%), 농약대 6개 항목(평균 375%)
-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지원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국비 80%, 지방비 20%)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 인상
-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계획

논재배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밭재배(채소, 특작, 기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밭재배(과수)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100원 택시 전 郡지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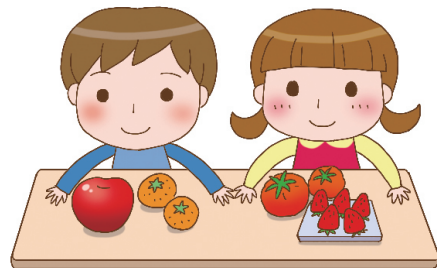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전 郡지역으로 확대
 -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과 사업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
- * '17년 일부 지자체(18개 시·군) → '18년 전 郡지역(82개 郡)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여 명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 실시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을 확대

- * 대상품목 : 53개→57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추가)
- * 사업범위 : ('17) 배·단감(전국), 사과·뽕은감(30개시군) → ('18) 배·단감·사과·뽕은감(전국)
- *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 5% 추가 할인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추가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 영세한 식품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보증보험 신규 도입

- *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 가능
- *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업인들 소득 · 재해걱정을 덜게 됩니다.

- | | |
|---------------------------------------|----|
| 01. 2017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지급 | 12 |
| 02. 2018년 쌀 · 밭 · 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지급 | 13 |
| 0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 14 |
| 0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지불 지급기한 폐지 | 15 |
| 05.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 | 16 |
| 06.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17 |
| 07.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출시 | 18 |
| 08.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 19 |
| 09.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 20 |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 | | |
|-------------------------------------|----|
| 10.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 24 |
| 11.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 25 |
| 1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 26 |
| 1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27 |
| 1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확대 | 28 |
| 15.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 29 |
| 16.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30 |



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17.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34
18. 산란계 신규농장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 적용	35
19.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36
20.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37
21.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실시	38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39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23. 100원 택시 전 군(郡)지역으로 확대	42
2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규 시행	43
25. 돌봄농장 등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4
26.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45
27.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46
2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47

5.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29.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50
30.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51
31.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52
32.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53
3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54
34.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55





농업인은 소득 · 재해걱정을
덜게 됩니다.

1.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 | | |
|---------------------------------------|----|
| 01. 2017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지급 | 12 |
| 02.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9월 조기지급 | 13 |
| 0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 14 |
| 0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지불 지급기한 폐지 | 15 |
| 05.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 | 16 |
| 06.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17 |
| 07.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출시 | 18 |
| 08.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 19 |
| 09.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 20 |



01 2017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044-201-1776~7

매년 3월 경 지급하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농업인의 명절준비 및 영농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는 약 1개월 정도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 변동직불금은 '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결정된 후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 단가는 2월초 확정됩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설 명절 전 지급

- 추진배경 :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지급요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지
 - (지급단가) '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확정 후 결정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변동직불금

02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044-201-1776~9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하여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2.1일부터 4.20일까지 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8월까지 지급대상자 요건 검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 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입니다.

쌀·밭·조건 불리직불금 조기 지급

- **추진배경**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 및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고정)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 및 초지
 - 지급단가 : 쌀고정직불금 평균 100만원/ha, 밭직불금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60만원/ha
 - 신청기간 및 장소 : 2.1~4.20(논이모작 3.9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직불금신청

03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 044-201-1832~3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시행합니다.

-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 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돕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18년에는 5만ha, '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 **추진배경** :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도모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쌀 생산조정제

04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 044-201-2432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을 폐지**합니다.

-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 (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 인상합니다.
-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 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기준

■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

■ 주요내용

① 직불금 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17년			'18년	
논	유기	60만원/ha		⇒	유기	70
	무농약	40만원/ha			무농약	50
밭	유기	120만원/ha		⇒	채소·특작·기타	130
					과수	140
	무농약	10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10
					과수	120

②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 가능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친환경농업직불

05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 044-201-1794

자연재난 피해 농업인들의 신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피해복구 주요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184%(2.8배) 인상하였습니다.

- 피해농가 지원 빈도가 높은 대파대* 14개 항목(평균 103%)과 농약대** 6개 항목(평균 375%)의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 대파대 : 일반작물(220만원/ha→266), 엽채류(297→410), 과채류(392→619) 등

** 농약대 : 일반작물(22만원/ha→52), 채소류(30→168), 과채류(6→175) 등

- 특히, 대파대 지원항목을 개편하고 재배유형(노지·시설) 구분없이 작물 종류에 따라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농가 영농재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지원단가 예시) 노지배추 : (기존) 일반작물 220만원 → (개선) 엽채류 410

노지수박 : (기존) 일반작물 220만원 → (개선) 과채류 619

- 향후 농업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5월, 지자체),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하여, 농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 추진배경 : 태풍, 우박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등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복구비 직접 지원
- ②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지원

■ 시행일 : 2017년 12월 26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17-118호)

06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 044-201-1728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하여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됩니다.
- 사과·뽕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을 전국으로 확대(사과·뽕은감: 30개 시·군→전국)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품목(사과·배·벼)에 대한 보험료를 상한선을 설정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합니다.
※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주요내용**
 - ① 대상품목 확대(53품목→57품목)
 - ②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확대
 - 사업범위 : ('17) 배·단감(전국), 사과·뽕은감(30개시군)→('18) 배·단감·사과·뽕은감(전국)
 - ③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추가 할인
 - ④ 주요품목(사과·배·벼)에 대한 보험료를 상한선 설정
- **시행일** : 2018년 2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07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 044-201-1792

농업인이 농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까지 상향**하였습니다.

-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간병·휴업급여 및 치료비 등을 산재보험 수준까지 대폭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춘 상품을 개발하여, 금년 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 산재1형(보험료 : 160천원) : 보험료 부담을 낮춘 실속형
- 산재2형(보험료 : 181천원) :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장 수준

구분	일반 1형	산재1형	산재2형	산재보험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1일당 4만/ 최대 120일	1일당 6만/ 최대 120일	1일당6.4만/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최대1천만원	실제비용/ 5,000만원	실제비용/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96천원	160천원	181천원	589천원

- 향후,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 수렴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안전 보험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작업 중 농업인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정책 보험으로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 및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정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지원율 : 50%)
- **시행일** : 2018년 2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보급

08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044-201-1742

2018년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됩니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개요

구분	개요	특성	법령 등 개정소요	시행 시기
전후 후박형 (종신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 보다 약 20% 많은 월 지급금 지급, 11년째부터는 적게 지급	• 종신형 유도 및 젊은 연령대의 생활자금 필요수요에 대응 가능	• 업무처리 요령	'17.3.1
일시 인출형 (종신형)	• 종신형 연금, 총 대출한도액의 30% 이내 금액을 필요한 시점에 인출 가능	• 경조사,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비 가능	• 공사법 시행령	'17.11.17
경영 이양형 (기간형)	•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일반기간형보다 월 지급금 약 27% 수준 증가	• 공사법 시행령 • 업무처리 요령	'17.11.17

참고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

09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044-201-1732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합니다.
 -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필요
- **주요내용**
 - ①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하여 전액 감면
 - ②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 12.31.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50% 감면
- **시행일** : 2018년 2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10.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24
11.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25
1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26
1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7
1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확대	28
1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29
16.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30



10 중소 식품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 044-201-2120

2018년부터 영세한 식품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합니다.

-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용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 국산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18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 이행 보증지원 제도 신규도입

- 추진배경 : 담보력이 부족한 식품 중소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원료 구매 자금을 위한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국산 원료 구매 시 신용거래 보증(최대 5천만원)
 - ② 보증보험료 지원(보험료의 50%)
- 시행일 : 2018년 3월(잠정, 민간 보증보험사와 상품개발 협의 중)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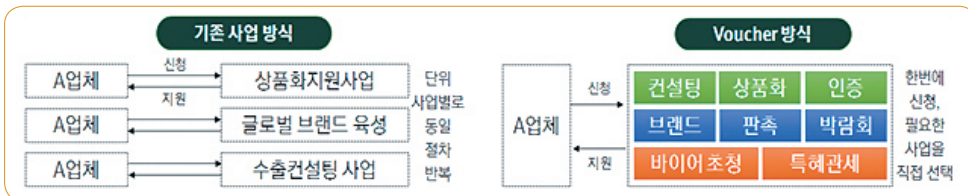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지원 제도 신규 도입

11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 044-201-217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출 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신규 도입

- **추진배경** : 농식품 수출업체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사업별로 매번 신청·선정해야 하는 수출업체의 번거로움을 해소
- **주요내용**
 - ① 수출바우처대상사업 : 글로벌브랜드 육성, 상품화사업, 해외인증, 수출컨설팅,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FTA특혜관세활용, 개별박람회, 개별바이어
 - ② 지원내용 : 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1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 044-201-2134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 윤리를 평가합니다.
-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식품명인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지정 평가기준 강화
 - (기존) 전통성, 정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보호가치 + (추가) 산업성, 윤리성
 - ②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 위임(농촌진흥청)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동물생산업은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영업(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주요내용**
 - 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②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③ 미허가·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18년 3월 22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동물보호법

1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 044-201-2363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길고양이 중성화지원, 공공동물장묘장 시설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18년도 756백만원) 하고,
 - * 지원내용 : 한 마리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국고20%, 지방비30%), 자부담50%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18년도 780백만원) 합니다.
 - * 지원내용 : 한 마리당 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국고20%, 지방비80%)
- 또한, 올바른 동물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동물장묘 시설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18년도 900백만원)할 계획입니다.
 - * '18년 지원액 : 2개소 × 50억원(지원단가) × 30%(보조율) × 30%(1년차)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지원확대

- **추진배경** :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조성으로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유기동물 입양비) 유실·유기동물 진단키트,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지원
 - (길고양이) 길 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동물장묘)동물장묘시설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동물 화장로 신설비 지원
- **시행일** : 2018년 2월 중(잠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사업시행지침서 >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5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 044-201-2040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8년도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개정

- **추진배경** :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수리 간주 규정 도입
- **주요내용**
 - ①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②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17년 12월 29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협력법

16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 됩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추진배경 :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 ③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7년 12월 28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종자산업법 시행령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7.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34
18. 산란계 신규농장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 적용	35
19.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36
20.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37
21.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실시	38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39



17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 044-201-2255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돌봄교실 간식은 주로 빵, 음료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되었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합니다.
 - 2018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24만여 명)
 - ② (공급기준) 학생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공급 예정
 - ③ (과일종류)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실·과채,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 ④ (공급형태) HACCP 인증 시설에서 제조한 조각과일로 컵과일 등의 형태
 - ⑤ (지원조건) 과일간식비 전액 보조(국고50%, 지방비50)
- **시행일** : 2018년 4월
 - *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방선거로 늦추어질 경우 공급시기 다소 지연 전망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과일간식 공급

18 산란계 신규농장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044-201-2326

밀식사육으로 질병에 취약한 가금 사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기준을 현행 마리당 0.05㎡에서 EU수준인 0.075㎡로 강화합니다.

* A4 용지 크기 : 0.06㎡

- 신규 허가를 받는 사육농장은 '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 후('25년 7월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행 사육 방식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란계 신규농장에 새로운 사육밀도 기준 적용

- **추진배경** : 밀식사육으로 질병에 취약한 가금사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
- **주요내용**
 - ①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 기준(현행: 마리당 0.05㎡ → 개선: 0.075㎡)을 EU 수준으로 개선
 - ② 신규농장은 시행일부터 적용, 기존농장은 7년 간 유예 후 시행
- **시행일** : 2018년 7월
 - ※ 「축산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 행정예고>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19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044-201-2336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 이전시 국비 40%(‘18년 90억원)와 지방비 40%를 지원(자부담은 20%) 할 계획입니다.
-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 AI 발생 예방 및 발생시 대규모 피해 방지
- 주요내용
 - ①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 지원
 - 지원조건 : 국가 보조 40%, 지방비 보조 40%, 지부담 20%
 - ② 의무사항 : 가금농가는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

20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 044-201-2542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 기존등록대상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가축전염병예방법

21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044-201-2339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운영자를 통해 계란이 유통되도록 단계적 의무화*(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17.10.24.)가 추진됨에 따라,
* 가정용 → 조리용 포함 → 가공용 포함
- 계란의 계란유통센터 유통의무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의 신·증축(개보수) 자금을 지원합니다.(‘18년 18억원)

계란유통센터를 통해 농가 계열화, 계란 브랜드 육성 및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 계란유통센터는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형성을 위한 공판장 역할 및 계란의 위생·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 지원을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
- 주요내용
 - 원활한 GP 유통 의무화 시행을 위해 GP의 신·증축 자금 등 지원(‘18년 18억원)
 - 대상 : 신축 2개소, 증축·개보수 2개소
 - 조건 : 보조 60%(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일 : 2017년 12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22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 044-201-2457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8년 10억원)하고,
-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18년 34억원)할 예정입니다.
 -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신규 분야 R&D 확대

- 추진배경 :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R&D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R&D 신규 지원('18년 964백만원)
 - ②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신규 지원('18년 3,417백만원)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안내서비스)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 | | |
|---------------------------------|----|
| 23. 100원 택시 전 군(郡)지역으로 확대 | 42 |
| 2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 | 43 |
| 25. 돌봄농장 등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 44 |
| 26.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45 |
| 27.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 46 |
| 2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 47 |



23 100원 택시 전 군(郡)지역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 044-201-1518

‘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18년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
- 주요내용
 - ① (대상지역) 일부 지자체(‘17년 18개 시·군) → 전 군지역(82개 군)
* 78개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담당
 - ② (회계개편) 농특회계 → 지특회계(지자체 자율성·권한 강화)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 044-201-1554

혁신역량 강화, 소득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통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력을 제고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역 순환경제, 생태문화 복원, 특화산업 육성 등 기본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며,
- 지역대학·연구소·주민 등이 참여하는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역량강화, 소득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규 시행

- 추진배경 : 특산물, 생태경관, 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기업유치 등 성장동력 창출
- 주요내용
 - ① 사업기간 : '18~'21(4년)
 - ② 사업규모 : 총사업비 700억원('18년 국고 49억원, 10개소)
 - ③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④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일반농산어촌개발

25 돌봄농장 등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 044-201-1572

돌봄농장 등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활동입니다.
 -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농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직업훈련·고용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사례가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되고 지역공동체가 성장하는 사회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018년부터는 이러한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발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농촌의 사회서비스 부족에 대한 대안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대상 ①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②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 회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26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 044-201-1574

사고, 질병, 영농교육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겠습니다.
-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농촌 임금 현실에 따른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필요
- **주요내용**
 - ①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6만원→7만원)
 - ② 영농교육참여 여성농업인의 지원 기준 단계적 완화(3일교육참여시 →1일교육참여시)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27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 044-201-1580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공동경영주 등록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경영주 동의규정 삭제
- 주요내용
 - ① 공동경영주 등록제도 개선(경영주 동의 필요 → 배우자 스스로 표기하여 등록)

현 행	개 정 안
③ 공동경영주 여부 []공동경영주 [경영주 동의]성명 (서명 또는 인)	③ 공동경영주 여부(○, ×)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 행정 예고

2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044-201-1739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를 쉼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간소화 필요
- **주요내용**
 -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쉼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 간소화
- **시행일** : 2018년 5월 중(잠정)
 -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시행령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29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 044-201-1532

청년농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돕고, 청년층의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실습농장)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영농의 전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운영하는 임대형 실습농장 시설을 조성합니다.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을 육성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규도입

- **추진배경** :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사항(자금 및 영농기술 부족)등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경영실습 임대시농장 시설 조성
- **주요내용**
 - ① 청년창업농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②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 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 지원
- **시행일** : 2018년 4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청년창업농육성대책

30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044-201-1737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3.3㎡ 당 3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 올해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5천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생애 첫농지취득 지원제도

- **추진배경** :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젊은농업인의 농업자본 형성 지원 강화도 농업·농촌 유입 확대
- **주요내용**
 - ① 영농경력이 2년 초과(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일 기준)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 지원
 - ② 45천원/3.3㎡(136백만원/ha)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에게 매도, 농가는 연리 1%로 11년~30년간 분할상환
 - ③ 지원한도 : 1인 1ha 이내(최대 100명)
- **시행일** : 2018년 1월(맞춤형농지지원 사업)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맞춤형농지지원사업

31 외식 창업 · 경영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 ☎ 044-201-2154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없이 매장운영 등 실전경험을 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확대합니다.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식창업 준비 및 외식 경영주 교육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외식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사업장 운영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외식 경영주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확대(1개소→5개소), 참가자부담 축소(50%→30%), 이용기간 확대(4주→최대3개월)
 - ②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강화교육 지원사업 신설
- 시행일 : 2018년 1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공모

32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 044-201-1537

2018년부터 농업 분야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②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 **시행일** : 2018년 1월

33 농식품 벤처 · 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 044-201-2460

‘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 · 창업인턴제를 실시합니다.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하고,
 -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대상 :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 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벤처 · 창업 인턴제

- 추진배경 : 농식품분야 예비창업가에게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 제공,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 및 창업정보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 ① 지원내용 :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
 - ②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 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시행일 : 2018년 3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농식품 벤처 · 창업 인턴제 실시

34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 044-201-2036

농식품 분야 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등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상반기 파견대상 기관은 FAO, IFAD 등 국제기구, 네덜란드 와게닝겐연구소 등 해외기업·연구소로,
 - 3개월 인턴십 기간 동안의 해외 체재비(최대 월 150만원,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와 왕복항공료, 비자·보험 등 준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우수한 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재학생(대학교 3년이상, 석박사과정)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간 50명 정도를 공모방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 신규도입

- **추진배경** : 국제기구, 기업 등 해외에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농식품 분야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① 연간 50명 내외(상·하반기 각 25명) 인턴 파견 및 체재비, 항공료, 비자·보험료 지원
 - ② 국내 선발(서류·면접)·추천 후 현지 채용기관은 추천 후보자 중 최종 선발
 - ③ 출국 전 사전교육 및 3개월 파견 종료 후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시행일** : 2018년 1월(상반기 원서접수 1.15~27, 하반기 6월중)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공지공고)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프로그램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발행인 : 2018년 1월
 -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홈페이지 : www.mafra.go.kr
-

- 디자인 · 인쇄 :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중앙사업단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